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13.(목) 10:00

제253회 금천구의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푸른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74호
- 나. 제 출 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1. 23.
- 라. 회부일자 : 2025. 1. 23.

2. 제안이유

관리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라.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마. 관리위탁 등(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9조, 제19조의2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5조, 제49조, 제50조
 -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조, 제5조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제정안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나.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정의하고 조례 목적을 규정함.

2)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조례의 적용 범위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함.

3)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4)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함.

5) 관리위탁 등(안 제8조)

- 어린이 공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검토의견

- 금천구관리규정에 따른 어린이공원 업무를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공원 관리의 실효성을 부가하고 제반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2021. 1. 1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9. 16.]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2021. 4. 13.>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쓰레기)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 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54호, 2025. 1.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2015. 10. 8., 2023.12.29>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시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5. “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8.]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 공원 관리청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운영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공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3. 28.>

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4.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전문개정 2009. 1. 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2. 10. 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62호, 2022. 10. 15., 일부개정]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5.>

1.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
 7.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 사용자의 연령범위, 관리주체의 이름과 연락처,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및 비상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5.>